172. 개발행위허가 신청

□ 민원개요

○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채취, 토지의 분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행위로 사전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함.

□ 민원 처리현황

담당부서	도시건축과	처리기간	15일	수수료
근거법령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6조제1항			없음

□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

구 비 서 류 명	부수	비고
1. 개발행위허가 신청서	1	
2. 사업계획서 및 피해방지계획서	1	
3. 개발행위 대상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	1	
4. 배치도, 설계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	1	
5.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(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)	1	
6.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·세목·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(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)	1	
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	1	

□ 업무처리 흐름도

○ 신청서 제출(민원인) → 민원접수(민원지적과) → 민원처리(도시건축과 개발행위허가 담당자) → 결과통보

□ 심사기준

○ 신청대상지의 용도지역 내 행위 제한
○ 토지 개발로 인한 안전대책 계획 수립 여부
○ 개발행위 규모 및 기반 시설 확보의 적정성
○ 환경 및 경관 등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

□ 문의처

부서명	전화번호	비고
도시건축과 개발민원담당	930-3402 930-3404	